

창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0310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피고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백근, 김종숙

변론 종결2021. 5. 27.

판결 선고2021.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43,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670,1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 제1항1)에 따라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이다.

나. C 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4. 1. 8. 피고에게 피보증인(채무자) C, 취급금융기관(채권자) 원고, 연대보증인 C의 대표이사 D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게 신용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보증서 및 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보증서

원고 삼문동지점 귀하

- 보증금액 : 425,000,000원
- 피보증인 : C
- 보증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 대출과목 : E대출
- 대출예정금액 : 500,000,000원
- 보증비율 : 85.00%

■ 이 사건 약관

제1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와 그 지역보증센터, 권역보증센터를 말합니다.

2. "채권자"라 함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상대처(원고)를 말합니다.

3. "채무자"라 함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피보증인(C)을 말합니다.

제5조(통지의무)

①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서면(또는 전산통지)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또는 전산통지) 외의 방식으로 관리기관에 통지할 경우에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4. 보증부채무의 원금(분할상환원금을 포함합니다)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③ 채권자는 제1항 각호의 통지사유가 발생한 때와 제1항 제4호 내지 제12호의 통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 각호의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4호 :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

제6조(보증부채무의 권리보전 및 담보대위)

① 채권자는 보증부채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보증부채무의 보증기한이 경과하거나 제5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2호의 통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이 채권자에게 통지한 채권보전요구통지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대손판정신청)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증부채무의 원금,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월을 경과한 때부터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대손판정 신청은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조치를 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판정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손판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때에는 신청기한을 경과한 날 이후의 보증부채무로부터 발생한 이자 등 종속채무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면책사항)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9. 제9조(대손판정신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12. 기타 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증부채무의 회수에 장애가 초래된 때

제16조(면책범위) 관리기관의 면책범위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신용보증면책기준(직접보증용)에 의합니다.

다. 원고는 2014. 1. 17. C와 사이에 여신과목 E대출, 여신금액 500,000,000원, 여신기간 2014. 1. 17.부터 2016. 1. 14.까지, 이자율 변동금리(MOR2) 기준금리 + 1.8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게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라. C에게 2017. 1. 14. 보증사고(원금 약정기일 미변제)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7. 2. 13. 피고에게 사고통지를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6조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까지 C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D이 소유하던 별지1 기재 제1, 3항 토지와 C이 소유하던 별지1 기재 제2, 4항 건물(제시외 건물은 등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목적물로 명시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2017. 3. 13.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F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28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8,535,200원으로 감축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2018. 1. 17.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8. 2. 14. 채권최고액을 48,535,2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카단129호로 청구금액을 406,670,273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7. 3. 23.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사.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8. 3. 20. 그 매각이 완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감정평가사사무소는 2017. 5. 25. 기준으로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을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895,629,160원(= 토지 421,410,000원 + 등기부 기재 건물 341,170,260원 + 제시외 건물 133,048,900원)으로 산출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주요한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2019.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9조에 따라 보증잔액 403,750,000원(= C에 대한 대출잔액 475,000,000원 × 보증비율 85%)에 2017. 3. 20.부터 2019. 2. 26.까지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1,370,821원 및 비용 2,445,300원을 모두 더한 437,566,121원(= 보증잔액 403,750,000원 + 이자 31,370,821원 + 비용 2,445,300원)을 대손판정신청금액으로 하여 대손판정을 신청하였다.

자. 피고는 2019. 3. 28. 이 사건 약관 제6조 및 별지3 기재 신용보증면책기준(직접보증용, 이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증부채권의 채권보전을 소홀히 해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장애받은 재산가액'을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의 가액 895,629,160원으로, '선순위 채권액'을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액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액 합계 507,052,830원(= 밀양시 23,657,534원 + I조합 307,660,430원 + J 173,904,166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1,830,700원)으로 보아 장애금액을 266,593,249원{= (장애받은 재산가액 895,629,160원 - 선순위 채권액 507,052,830원) × 85% - 구상권 회수금액 63,696,631원,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으로 산출하였고, 위 아.항 기재 보증잔액 403,750,000원에서 위 장애금액 266,593,249원을 공제한 잔액 137,156,751원(= 보증잔액 403,750,000원 - 장애금액 266,593,249원)을 원금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10. 13.까지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126,422원 및 비용 2,445,300원을 합한 142,728,473원(= 원금 137,156,751원 + 이자 3,126,422원 + 비용 2,445,300원)을 대손판정금액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28.

142,728,473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급하고, 272,670,114원(= 피고가 인정한 대손판정신청금액 415,398,587원3) - 대손판정금액 142,728,473원)을 면책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장애받은 재산가액'을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감정평가금액 895,629,160원으로, '선순위 채권액'을 별지2 기재 배당표의 배당액에 따른 507,052,830원으로 정하여 면책금액을 272,670,114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는 장애산정 재산가액 산출기준을 "채권보전조치 기한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채권자내규에 의한 감정가격 또는 관리기관(외부평가기관의 감정가격 포함)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시외 건물은 매각대금의 결정 및 소유권 취득 등에 있어서 불완전한 법률관계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실무는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하여 금융기관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제시외 건물이 제외된 감정평가금액 762,580,260원을 '장애받은 재산가액'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 및 제7조는 면책범위를 "'장애받은 재산가액'에서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 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 당시의 선순위 채권액을 알 수 없고,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은 금융기관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2017. 2. 28.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838,000,000원을 '선순위 채권액'으로 정해야 한다.

'장애받은 재산가액'을 762,580,260원으로, '선순위 채권액'을 838,000,000원으로 정하여 면책금액을 계산하면 면책범위가 -64,106,779원{ = (762,580,260원 - 838,000,000원) × 85%}으로 음수이므로 면책금액은 0원이 된다. 설령 '장애받은 재산가액'을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895,629,160원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장애받은 재산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은

57,629,160원(= 895,629,160원 - 838,000,000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63,696,631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입게 되는 피해액이 없어서 역시 면책금액은 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272,670,11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의 장애산정 재산가액 산출기준에 따르면 채권보전조치 기한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장애받은 재산을 산정할 수 있는데, 외부평가기관의 감정가격에는 경매법원이 감정인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표 상의 감정평가액이 포함되므로,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7. 5. 25.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감정평가표에 따른 895,629,160원을 '장애받은 재산가액'으로 정해야 한다.

이 사건 면책기준 제7조의 면책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은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되, 그 채권액은 대손판정을 하는 당사자인 피고가 위 선순위 채권액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의 합계액인 507,052,830원을 '선순위 채권액'으로 정해야 한다.

3. 판단

가. 면책범위에 관한 판단

-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제16조는 피고의 면책범위를 이 사건 면책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 및 제7조는 그 면책범위를 "'장애받은 재산가액'에서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는 장애산정 재산가액의 산출기준을 "채권보전조치 기한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채권자내규에 의한 감정가격 또는 관리기관(외부평가기관의 감정가격 포함)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장애받은 재산가액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감정평가사사무소가 2017. 5. 25. 기준으로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제시외 건물 포함)의 감정평가금액을 895,629,160원으로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시외 건물 중 '4-7 저온창고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20.3m²'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지1 기재 제2, 4항 건물에 덧붙여서 증축된 건물로서 위 건물에 연결되어 사용 중이었던 사실, 제시외 건물 중 '4-7 저온창고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20.3m²'은 별지1 기재 제4항 건물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나 아주 근접하여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일괄매각이 이루어졌고,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 3. 20.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는 2019. 6. 13. 별지1 기재 제2, 4항 건물을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창고시설 1층 2,101.97㎡, 2층 358.23㎡ 건물로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제시외 건물은 그 구조상 별지1 기재 제2, 4항 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아주 근접하여 건축되어 있던 점, 제시외 건물의 용도도 별지1 기재 제2, 4항 건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 취득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시외 건물은 별지1 기재 제2, 4항 건물과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 이에 부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별지1 기재 제2, 4항 건물의 구조, 규모, 위치와 제시외 건물의 구조, 규모, 위치 등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채권보전조치 기한이 도래하기 전 C의 사업장 소재지인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방문하여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면 제시외 건물이 증축되어 존재한다는 점 및 제시외 건물이 별지1 기재 제2, 4항 건물에 부합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 및 제7조의 면책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장래산정 재산가액'은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감정평가금액 895,629,16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앞선 배당권자 및 그 배당액은 근저당권자 밀양시의 23,657,534원, 근저당권자 I조합의 307,660,430원, 근저당권자 J의 173,904,166원, 근저당권자 F의 48,535,200원,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의 1,830,7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선순위 채권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변제권	2010. 7. 6.자 근저당권	2016. 6. 1.자 근저당권	2016. 6. 1.자 근저당권	2017. 3. 13.자 근저당권	교부채권
채권최고액	₩150,000,000₩130,000,000	₩338,000,000	₩220,000,000	₩48,535,200	₩0
채권금액	₩23,657,534	₩260,000,000	₩151,221,014	₩220,000,000	₩1,830,700
원금 이자 합계	₩23,657,534	₩47,660,430	₩22,683,152		
	₩307,660,430	₩173,904,166	₩220,000,000	₩1,830,700	

나) 위 선순위 채권 중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 이후 2017. 3. 1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F의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선순위 채권의 배당 당시 그 채권액 합계는 507,052,830원(= 밀양시 23,657,534원 + I조합 307,660,430원 + J 173,904,166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1,830,7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선순위 채권자들은 2017. 5. 내지 6.경 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된 선순위 채권의 금액 합계는 채권신고서 제출 이후 이자가 계속 가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507,052,830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 당시 선순위 채권의 금액 합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신고서가 작성된 2017. 5. 내지 6.경 당시 또는 배당 당시 선순위 채권의 금액 합계보다 적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 및 제7조의 면책범위는 '장애받은 재산가액'에서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선순위 채권액이 커질수록 그 면책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된다(채권최고액을 차감할 때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된다).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 당시 선순위 채권의 금액 합계가 얼마인지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액수는 507,052,830원보다는 크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선순위 채권들의 채권최고액을 장애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 및 제7조의 면책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은 기록상 알 수 있는 채권액 중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 당시 선순위 채권액 합계인 507,052,830원으로 본다.

4) 소결론 이처럼 '장애산정 재산가액'을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감정평가금액 895,629,160원으로 정하고,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 당시 선순위 채권의 금액 합계인 507,052,830원으로 정하면,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책범위는 $330,289,880원 \{ = (장애산정 재산가액 895,629,160원 - 선순위 채권액 507,052,830원) \times 85\% \}$ 이다.

나.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초래된 장애금액에 관한 판단

1) 신용보증기관의 대출보증약관 중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채권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등 참조).

2) ① 원고가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까지 C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서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밀양시, I조합, J,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는 여전히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점, ②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까지 원고의 채권보전조치가 있었다면, 2017. 3. 13.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 F는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피고와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하게 배당을 받게 되는 점, ③ 원고가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까지 채권보전조치를 하였더라도, 피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은 여전히 피고와 같이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와 동일한 순위의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액수에 관해서는 원고가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는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 기타의 방법으로 구상권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면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까지 채무자 C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인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초래한 장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 취급했을 때 피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실제배당할 금액 787,668,399원에서 밀양시, I조합, J,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의 배당액을 공제한 잔여액은 280,615,569원(= 787,668,399원 - 밀양시 23,657,534원 - I조합 307,660,430원 - J 173,904,166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1,830,700원)이고, 1차적으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해야 하는 F, 피고, 원고의 채권액 합계액은 1,530,249,172원(= F 48,535,200원 + 피고 406,670,273원 + 피고 852,786,602원4) + 원고 71,765,343원5) + 원고 150,491,754원6))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 취급했을 때 피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0,878,159원[= {피고의 채권액 406,670,273원 × (선순위 배당액을 공제한 잔여액 280,615,569원 / 일반채권자의 채권액 합계액 1,530,249,172원)} - 피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배당액 63,696,630원]이다.

다. 소결론

원고가 채권보전조치 기한인 2017. 2. 28.까지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정되는 장애금액은 이 사건 면책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책범위 330,289,880원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10,878,159원에 한정된다. 나아가 보증잔액 403,750,000원에서 장애금액 10,878,159원을 공제한 잔액 392,871,841원(= 보증잔액 403,750,000원 - 장애금액 10,878,159원)이 대손판정의 대상이 되는 원금이 되고,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10. 13.까지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955,325원(= 원금 392,871,841원 × 4% × 208일/365일) 및 비용 2,445,300원을 합한 404,272,466원(= 원금 392,871,841원 + 이자 8,955,325원 + 비용 2,445,300원)이 대손판정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손판정금액 261,543,993원(= 404,272,466원 - 142,728,4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우영

판사임락균

판사최지원

별지

1) 제5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B단체에서 취급한다.

2) Market Opportunity Rate: 시장조달금리

3) 415,398,587원 = 보증잔액 403,750,000원 + 2017. 3. 20.부터 2017. 10. 13.까지의 이자

9,203,287원 + 비용 2,445,300원. 원고는 2019. 2. 26.까지의 이자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 3항에 의하여 대손판정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대손판정을 신청한 때에는 대손판정 신청기한 경과 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대손판정 신청기한인 2017. 10. 13.까지의 이자만을 인정하였다.

4) 852,786,602원 = 이 사건 보증서와 무관하게 피고가 별개의 채권에 기하여 받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카단131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

5) 71,765,343원 = 원고가 받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카단130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

6) 150,491,754원 = 원고가 받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카단132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